

의안번호	2206089
의 퇴 인	김선교의원
회 답 일	2024. 12. 12.
추 계 번호	24B55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1조제4·5항 신설(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제3항에 따라 <u>사용료 또는 관리비</u>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u>달리 부과</u>할 수 있음(제5항) ※ (수입감소) 공설동물장묘시설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 관리비 등을 완화하여 부과하려는 것임	재량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1조제4·5항 신설(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제4항) • 미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외부 위탁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제5항)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지역주민 사용료 등 감면(안 제71조제5항 신설)

□ 현행법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관리비 등의 금액, 부과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전남 임실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오수²⁾팻 추모공원’ 1개소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수팻 추모공원 설치시 2018~2019년에 15억원을 지원함
* 총사업비 50억원 중 국비 30%

※ 참고로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장묘업 영업장은 74개소, 종사자 수는 340명
([참고자료]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 현황(2023년) 참고)

□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관리비 등을 해당 시설 소재 지역주민과 타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지급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용료·관리비 감면 또는 할인 등을 하는 경우 지방수입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지방수입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할인율,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 중 시설이용자 수 등의 자료가 필요함

1) 법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오수(槨樹)개는 불이 난 것을 모르고 잠든 주인을 구했다는 개. 주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죽은 개의 주검을 묻어주고 자신의 지팡이를 꽂았는데, 나중에 이 지팡이가 실제 나무로 자라났다고 한다. 훗날 ‘개 오’(槨)자와 ‘나무 수’(樹)를 합하여 이 고장의 이름을 ‘오수’(槨樹)라고 부르게 되었다.

(자료: 오수 팻 추모공원 홈페이지)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사례가 부족하고, 향후 공설동물장묘시설 이용자로서 해당 지역주민 수, 사용료·관리비 기준금액 및 감면·할인을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지방수입감소 규모의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임실 오수펫 추모공원의 경우, 현재 지역주민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³⁾

3) 오수 펫 추모공원 사용료 감면 현황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시설의 사용료(5kg기준) 25% 할인
- 임실 거주 반려인에 대하여 화장시설의 사용료(5kg기준) 30% 감면

시설별	구분	사용료	비고
화장	일반동물(5kg기준)	• 주간요금(도착시간 기준 9시 이후~18시): 200,000원 • 야간요금(도착시간 기준 18시 이후~9시 전): 250,000원→230,000원 ※ 5kg이상 시, 1kg당 9,000원씩 추가	• 할인, 감면 적용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중복할인 불가
	소동물/특수동물(1kg이하의 햄스터, 고슴도치, 토끼, 금붕어, 이구아나 등)	• 150,000원(기능성 유골함 필수 증정)	• 할인 적용없음

자료: 오수 펫 추모공원 > 장례서비스 안내 > 장례비용
<<https://www.osupet.com/service/cost/>> (검색일: 2024.12.11.)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 현황(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⁴⁾

<반려동물 영업>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동물 생산업		동물 수입업		동물 판매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영업장	종사자
전국	20,575	25,506	2,011	3,136	94	189	3,154	3,904	74	340	541	739	4,820	6,115	8,404	9,414	1,477	1,669
서울	2,626	3,342	27	29	9	26	340	476	—	—	68	89	601	869	1,198	1,467	383	386
부산	502	502	29	32	3	3	64	78	3	3	12	12	133	133	236	219	22	22
대구	872	973	18	20	2	2	140	165	1	2	15	17	232	251	444	494	20	22
인천	1,404	1,642	89	121	16	20	196	212	2	2	29	31	311	386	619	714	142	156
광주	531	536	15	15	4	4	112	112	1	1	8	8	126	128	243	244	22	24
대전	626	838	46	61	3	47	125	144	—	—	9	17	140	131	279	336	24	102
울산	520	596	25	29	2	2	84	92	1	1	13	18	132	154	234	268	29	32
세종	99	119	8	14	—	—	12	14	2	6	1	1	23	28	52	55	1	1
경기	6,975	8,859	803	1,475	36	52	1,108	1,338	27	194	172	232	1,635	2,136	2,638	2,852	556	580
강원	697	900	56	78	4	7	95	112	3	9	34	62	180	264	294	325	31	43
충북	751	1,106	120	177	—	—	122	181	5	10	30	56	171	267	271	359	32	56
충남	1,099	1,335	247	333	3	4	174	217	4	10	25	39	239	287	357	392	50	53
전북	662	949	102	179	1	2	119	191	6	20	23	39	143	233	234	251	34	34
전남	675	769	107	122	—	—	106	115	3	11	39	44	147	163	238	276	35	38
경북	971	1,159	209	291	6	6	143	188	7	21	33	38	225	247	312	325	36	43
경남	1,268	1,475	103	150	5	14	187	229	9	50	19	25	289	309	617	658	39	40
제주	297	406	7	10	—	—	27	40	—	—	11	11	93	129	138	179	21	37

4) 농림축산검역본부, 「'23년 동물의 등록, 구조·보호 등 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24.7.

<반려동물 영업 현황(연도별 비교)>

(단위 : 개소, 비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묘업	업체수	44	57	63	68	74
	증감(전년비, %)	↑ 33.3	↑ 29.5	↑ 10.5	↑ 7.9	↑ 8.8
판매업	업체수	4,179	4,159	4,010	3,944	3,154
	증감(전년비, %)	↑ 3.0	↓ 0.5	↓ 3.6	↓ 1.6	↓ 20.0
수입업	업체수	75	120	122	125	94
	증감(전년비, %)	↑ 7.1	↑ 60.0	↑ 1.7	↑ 2.5	↓ 24.8
생산업	업체수	1,690	1,952	2,019	2,086	2,011
	증감(전년비, %)	↑ 42.5	↑ 15.5	↑ 3.4	↑ 3.3	↓ 3.6
전시업	업체수	548	664	653	638	541
	증감(전년비, %)	↑ 39.1	↑ 21.2	↓ 1.7	↓ 2.3	↓ 15.2
위탁관리업	업체수	3,809	4,406	4,802	5,034	4,820
	증감(전년비, %)	↑ 38.8	↑ 15.7	↑ 9.0	↑ 4.8	↓ 4.3
미용업	업체수	6,351	7,271	8,222	8,868	8,404
	증감(전년비, %)	↑ 34.4	↑ 14.5	↑ 13.1	↑ 7.9	↓ 5.2
운송업	업체수	459	656	794	1,313	1,477
	증감(전년비, %)	↑ 63.3	↑ 42.9	↑ 21.0	↑ 65.4	↑ 12.5
합계	업체수	17,155	19,285	20,685	22,076	20,575
	증감(전년비, %)	↑ 27.2	↑ 12.4	↑ 7.3	↑ 6.7	↓ 6.8

<동물 장묘업 시설 및 서비스>

(단위: 개소)

구분	계	장례	봉안	화장	건조장
전국	74	72	66	68	4
서울	—	—	—	—	—
부산	3	3	3	3	—
대구	1	1	—	—	—
인천	2	1	2	—	—
광주	1	1	—	—	—
대전	—	—	—	—	—
울산	1	1	1	1	—
세종	2	2	2	2	—
경기	27	26	24	27	—
강원	3	3	3	3	—
충북	5	5	4	5	—
충남	4	4	3	4	2
전북	6	6	5	5	1
전남	3	3	3	2	1
경북	7	7	7	7	—
경남	9	9	9	9	—
제주	—	—	—	—	—